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업의 경우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항만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선업 내용 명확화, 통선사업의 등록기준에 통선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노후화된 알루미늄선박(통선)에 대한 선령의 제한(연장)기준을 추가하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행위”를 “행위(사람의 운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15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및 질문 제28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 중 “강선(鋼船)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를 “강선(鋼船), 알루미늄선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로 하고, “강선 및 FRP선에”를 “강선, 알루미늄선 및 FRP선에”로 한다.

별표 6 등록기준란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선박			
1) 제2조제1호가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통선: 20톤 이상(여 객보험에 가입된 선박)	통선: 10톤 이상(여 객보험에 가입된 선박)	통선: 5톤 이상(여 객보험에 가입된 선박)
2) 제2조제1호라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급수선: 5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별표 6 비고 제4호의2 중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를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용역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알루미늄 선을 통선으로 사용하는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선박이 선령의 제한기준을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단서에 따라 선령기준의 연장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통선을 사용하는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별표 6 등록기준란 제1호나목의 통선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u>행위</u> 나. ~ 라. (생략) 2. ~ 4. (생략)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 ----- ----- ----- ----- 1. ----- ----- 가. ----- ----- - <u>행위(사람의 운송을 포함한다)</u>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u>공고하여야</u> 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공고해야</u> -----. ③ ----- ----- ----- <u>제출해야</u> ----.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	제10조(자격증의 발급) -----

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생략)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
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
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 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 발급해야 -----.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야 -----.

③ -----

----- 해야 -----.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

----- 제출해야 -----.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
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
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
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
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 7. (생략)

<신 설>

----- 제출해야 -----.

② -----

----- 제출해

야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발
 급해야 ----.

[illegible]

1. ~ 7. (헌행과 같음)

8.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및
질문

8. (생략) ② ~ ⑤ (생략)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해야 -----.
부칙	부칙
<신설>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용역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알루미늄선을 통선으로 사용하는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선박의 선령을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선령기준의 연장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통선을 사용하는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별표 6 등록기준란 제1호나목의 통선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					기준(제12조 관련)				
구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산항, 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구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산항, 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등록기준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등록기준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나. 선박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우	통선 : 20톤 이상	통선 : 10톤 이상	통선 : 5톤 이상		나. 선박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우	통선 : 20톤 이상 (여객보선에 가입된 선박)	통선 : 10톤 이상 (여객보선에 가입된 선박)	통선 : 5톤 이상 (여객보선에 가입된 선박)
	2) 제2조제1호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수선 : 50톤 이상	금수선 : 10톤 이상	금수선 : 5톤 이상		2) 제2조제1호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수선 : 50톤 이상	금수선 : 10톤 이상	금수선 : 5톤 이상
비고 3. 항만용역업의 시설등의 기준 중 통선의 선령(船齡)은 목선(木船)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여야 하며 강선(鋼船)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강선 및 FRP선에 대해서만 5년의 범위에서 그 선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비고 3. ----- ----- ----- ----- ----- ----- ----- ----- 강선, 알루미늄선 및 FRP선에 ----- -----.				
4의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4의2. -----				

도지사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u>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선 또는 급수선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u>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의</u> ----- ----- ----- -----.
--	--